

불법촬영물의 위험성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angers of Illegal Filming and Counterplan

김 재 한*
Kim, Jae-Han

목 차

- | | |
|--------------------------|--------------------------|
| I. 서 론 | III. 불법촬영물의 위험성과 대응방안 검토 |
| II. 불법촬영물 규제의 현주소와 유형 분류 | IV. 결론 |

기존의 성폭력 범죄와 달리 성관련 영상물을 온라인상에 유포하는 형태의 성범죄는 광범위한 영역에 빠르게 전파되는 특성으로 인하여 유포된 영상물의 삭제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피해회복이 어렵다.

특히데이트폭력의 한 유형으로서 이별을 통보하는 것에 대한 보복의 수단으로 과거 촬영하였던 연인과의 성적 행위가 담긴 영상이나 민감할 수 있는 사생활이 담긴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는 행위, 즉 리벤지포르노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그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이른바 ‘n번방’으로 불리는 사건을 계기로 성착취 관련 영상물의 불법촬영이나 유포에 대한 처벌규정과 불법촬영물에 대한 소지 및 시청에 관한 처벌규정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신설하였다. 이는 디지털성범죄의 처벌 대상과 범위를 확장시키고,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데이트폭력의 수단으로서의 불법촬영물을 온라인상에 유포하는 행위는 일반적인 형태의 범죄에 비해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지속적·반복적으로 행해지며 심각한 2차 범죄로 진행되는 등의 특징이 있어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이유에서 데이트폭력을 체계적·근본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독자적인 처벌법규의 필요성

<https://doi.org/10.35148/ilsilr.2021.48.439>

투고일: 2021. 1. 31. / 심사외일: 2021. 2. 4. / 게재확정일: 2021. 2. 15.

* 목포대학교 법학연구소 선임연구원, 법학박사

Senior Researcher, Ph.D., Mokpo National University Law Institute

이 제기되며, 나아가 이별 후 성관계 동영상 유포행위(리벤지포르노)에 대한 적절한 입법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외국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세분화 된 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성관련 영상의 불법촬영·무분별한 유포, 소지·시청에 관한 합리적인 제재규정의 근거를 제시하면서, 불법촬영물과 관련이 있는 영역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과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함께 마련될 수 있도록 입법의 기본방향과 주요 내용들을 기술하고 있다.

[주제어] 불법촬영물, 리벤지포르노, 디지털 성범죄, 삭제의무, 위험성

I. 서론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개념은 시대 상황이나 사회구성원들의 인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약자”란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 중에서 사회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 약자로 취급되는 사람이나 이러한 취급으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그리고 소수자란 어원적으로 ‘majority’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minority’를 의미하며, 사회적 소수자 또는 사회적 소수집단이라고도 부른다.¹⁾ 소수자는 다수자와 반대되는 대부분의 경우에 사용되지만 일반적으로 다수가 인정하는 이념이나 사상과 다르게 생각하는 소수를 말하기도 한다. 그리고 수적으로는 다수에 해당하지만 권력의 중심에서 벗어나 소외되어있는 계층을 나타내기도 한다.²⁾

그동안 우리 사회는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의 보호를 위해 관련 법률을 제정하거나 제도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소외되어 고통받는 계층은 존재하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 그리고 인터넷 플랫폼의 다변화는 다양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면서 현대인의 생활 전반에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은 삶의 편리라는 긍정적인 면과 함께 사이버 공간에서의 범죄 증가라는 부정적인 면도 동시에 발생시킨다. 이러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범죄 중 가장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불법촬영물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이다. 특히,

1) 나달숙,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보호와 인권교육 방향”, 법과인권교육연구 제6권 제3호,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2013, 25쪽.

2) 김신규, 인권법 강의, 청목출판사, 2016, 287-288쪽.

이혼이나 연인 간 불화가 원인이 되는 데이트폭력의 한 유형으로서 성적 촬영물의 비동의 유포행위(리벤지포르노)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특성상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그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는 인터넷 플랫폼을 이용한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리적인 시공간을 초월한다. 즉 사이버 공간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피해의 확산이 빠르고 광범위하다. 그러나 디지털 성범죄를 접하는 사람들은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하고, 비동의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유포하는 행위가 범죄라는 것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상은 불법촬영물에 대한 접촉 빈도가 높아 그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저하된 부분도 있겠지만,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흡하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본 논문에서 논의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중 데이트폭력 관련 성적 촬영물의 비동의 유포행위(리벤지포르노)는 밀접관계라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특성은 일반적 형태의 범죄에 비해 2차 범죄로 연결되어 피해의 확산 가능성을 높이며, 피해자 보호가 쉽지 않고, 피해 정도에 비해 규제가 미흡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는 데이트폭력에 대한 독자적인 규정의 미비에 따라 개념이 통일되지 못하고 다양한 용어가 혼용되고 있으며, 행위 유형에 따른 불법의 정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아 처벌의 수위나 제재의 기준이 국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않다는 점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의 위험성에 대한 핵심을 파악하여 불법촬영물의 비동의 유포 및 소지와 시청이 어떤 측면에서 어떻게 처벌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를 분석하여 합리적인 제재 규정의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불법촬영물에 의해 발생되어지는 위험성의 정도와 위험성의 증가원인에 대해 검토한 후 범죄행위의 예방 방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함께 마련될 수 있도록 그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 불법촬영물 규제의 현주소와 유형 분류

데이트폭력과 불법촬영물에 대한 규제의 현실을 파악하고 올바른 형태의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해당 범죄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해당

범죄의 대상과 관련 용어에 대한 개념 정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해당 범죄의 경우에는 그 유형이나 대상에 따라 위험 요소가 다양하기 때문에 피해의 대상에 따른 기준을 분류하고, 피해의 위험성 정도에 따라 대상을 구분하여야 한다. 그리고 촬영을 하는 사람과 촬영을 당하는 사람의 관계와 그 관계로 인한 보복 가능성의 위험에 따른 각기 다른 범주의 기준을 분류하고 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준의 설정과 대상의 분류는 단순히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성관련 범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또 다른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선행연구를 검토한 후 관련 용어와 그 의미를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대상의 범위와 기준을 확정한다. 그리고 그에 따른 위험성에 대해서도 논의해 보고자 한다.

1. 관련 용어의 개념 정립

1.1 디지털 성범죄

이른바 ‘n번방’으로 불리는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에서는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함) 제14조에서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에서 불법촬영에 대한 제재의 기준을 새롭게 규정하였다. 개정된 법률에서는 ‘디지털 성범죄’나 ‘사이버상의 성범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대상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거나, 위험성의 기준 및 불법성의 범위를 별도로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혼용하고 있는 것이다.³⁾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디지털 성범죄라는 용어 대신 상대방이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어떤 사람의 행동이나 모습을 몰래 촬영하는 행위인 “도촬”,⁴⁾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 콘텐츠 제작 등을 통해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하기 위해 온라인에 유포하는 행위를 기준으로 리벤지포르노의 개념으로 정리한 “비동의 성적촬영물”,⁵⁾ 이혼한 전 배우자나 헤어

3) 박현정, “불법촬영물 소지 및 시청에 관한 처벌규정의 비교법적 고찰-성폭력처벌법 제14조를 중심으로-”, 법이론실무연구 제8권 제4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20, 112쪽.

4) 배상근, ““도촬행위” 현상과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 성폭력처벌법 제14조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제27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 202쪽.

5) 이은영, “비동의 성적촬영물의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제15권 제4호, 한국범죄심리학회, 2019, 167-168쪽.

진 전 교제상대가 상대방에게 거절당한 것에 보복하고자 상대의 나체사진이나 동영상 등 상대가 공개할 생각이 없는 사적인 성적 동영상을 무단으로 인터넷의 게시판 등에 공개하는 행위인 “리벤지포르노(revenge pornography)”,⁶⁾ 그리고 사전적 의미를 내용으로 촬영을 당하는 사람이 촬영을 당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로 촬영하는 카메라 또는 그런 방식이라고 하는 “몰래카메라”⁷⁾ 등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는 해당 연구의 유형이나 목적에 따라 그 개념을 다르게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련 용어의 통일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인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보고서 내용을 참고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전후로 ‘온라인 성폭력’에 대한 범주를 개념화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는 ‘온라인 성폭력’이 ‘사이버 성폭력’이라는 개념과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하였다. 이후 사이버상에서 문자나 사진 또는 영상 등을 통하여 성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로 일방적인 성적 메시지의 전달, 성적인 대화 강요, 그리고 여성의 신상 정보 및 음란한 동영상, 사진 등 유출을 통한 사이버 스토킹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이버 성폭력’이 분리되어 사용되었다.⁸⁾ 2017년 출범한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는 ‘사이버 성폭력’에 대해 “카메라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유포(협박도 포함)하거나 저장하고 전시하거나 사이버 공간 및 SNS 등에서의 성적 괴롭힘”이라는 점에서 “젠더에 기반한 폭력”이라고 보고, 여기에 해당하는 유형으로 온라인/인터넷 기반 성폭력, 디지털 성폭력, 온라인 기반 성매매, 온라인상의 성적 괴롭힘, 성적 이미지 조작/착취 성폭력 등을 제시하고 있다. 2015년 10월에는 음란물이나 불법촬영물의 불법 유포 장소였던 소라넷의 추방을 위한 ‘소라넷 아웃 프로젝트’가 민간단체로 전환되면서 ‘디지털 성범죄 아웃(D.S.O.)’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이 시기에 ‘디지털 성범죄’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마련되었다. 이후 2017년 9월에는 정부가 비동의 촬영 및 유포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을 발표하였는데, 이때 디지털 성범죄라는 용어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⁹⁾ 현재는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여성의 인격권과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

6) 윤상민, “일본의 리벤지포르노 방지법의 내용과 우리나라의 대처 현황 및 그 시사점”, 법학연구 제17권 제4호, 한국법학회, 2017, 200쪽.

7) 안영규, “불법촬영 관련 입법적 제언을 위한 질적 연구”, 한국범죄정보연구 제4권 제1호,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2019, 59쪽.

8) 김은경, “사이버 성폭력의 현실과 쟁점들”,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제7권,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2001, 74쪽.

9)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228608>>, 검색일: 2021. 01. 10.

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이미지 이용 온라인 성폭력 삭제 및 차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명칭을 ‘디지털성범죄’ 대응팀으로, 피해자에 대한 삭제지원업무 담당 기관의 명칭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로 부르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실시한 전문상담원 교육과정에서 ‘기술매개 젠더기반폭력’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여 재개념화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¹⁰⁾

호주의 학자 헨리와 파웰(Henry&Powell)은 ‘기술매개 성폭력(Technology Facilitated Sexual Violence, TFSV)’¹¹⁾이 현재의 디지털 문화 속 성폭력 문제를 다루는 개념으로 적절하다고 제안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기술매개 젠더기반폭력’으로의 재개념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일반인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우리에게 익숙하면서 공공기관에서도 사용되어지는 용어를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최근 관련 범죄의 양상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비동의 촬영행위와 불법촬영물의 제작, 유포 그리고 소비로 연결되는 변화를 반영하여 다소 지엽적이며 한정적인 의미의 사이버나 온라인이라는 단어보다는 디지털이라는 단어를 선택하는 것이 적합하다.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가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1.2 리벤지포르노(revenge pornography)의 재개념화

스마트폰의 보급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2010년대 이후 온라인 공간에서는 여성의 성적 이미지나 신체(일부) 이미지를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가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예컨대 헤어진 연인이 직접 촬영한 나체사진이나 다른 여성의 사진과 합성한 이미지, 또는 동영상 등을 SNS에 올리거나 무단으로 인터넷의 게시판 등에 공개하는 행위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행위의 특징을 대부분 ‘원한’으로 인한 충동적인 것으로 보고 성적 이미지를 동의없이 유포하는 행위를 ‘리벤지포르노’라고 명명해왔다.¹²⁾

10) 장다혜/김수아, “온라인 성폭력 범죄의 변화에 따른 처벌 및 규제 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8, 45-53쪽.

11) 헨리와 파웰은 다양한 대중들에게 사회적 수치심의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기술의 전례없는 힘에 주목하며, 성폭력과 괴롭힘을 용이하게 하는 새로운 기술의 사용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기술매개 성폭력’이라는 용어를 제안한다. 그리고 기술매개 성폭력을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로 범주화하는데, (1) 성적 이미지의 권한없는 제작 및 유포(위협을 포함), (2) 성폭력 이미지의 제작 및 유포(위협을 포함), (3) 성폭력을 위한 수단(carriage service)으로의 이용, (4) 온라인 성희롱과 사이버스토킹, (5) 젠더에 기초한 혐오표현, 그리고 (6) 가상 공간이 그것이다, 장다혜/김수아, 위의 논문, 53쪽.

그러나 ‘리벤지포르노’라는 용어의 사용은 사회의 인식변화에 따라 적합하지 않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다. 복수를 뜻하는 리벤지라는 단어의 사용도 문제이지만 당사자의 동의하에 상업적인 목적으로 제작·유포되는 포르노그래피와는 다르게 리벤지포르노에서 사용되어지는 포르노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유포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의 보호가 침해되기 때문이다.¹³⁾ 또한 리벤지포르노의 제작은 대부분이 ‘복수’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으나, 유일한 동기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금전적 이익의 취득, 협박, 명예훼손, 흥미유발 등의 이유로도 제작 및 유포되기 때문이다.¹⁴⁾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최근 리벤지포르노를 ‘비동의 포르노’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문헌들도 있으나, 이러한 용어 역시 여전히 포르노라는 용어를 고수하고 있어 적합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노골적인 성적 표현과 폭력성이 짙게 깔려 있는 리벤지포르노라는 개념의 사용 대신 ‘비동의 유포행위’라는 단어의 사용이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테이트 폭력에서 기인하는 불법촬영물의 경우 최초 촬영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절차라는 생각에 상대방의 동의하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헤어진 이후에는 상대방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유포되기 때문이다. 또한 ‘비동의 유포행위’라고 개념을 사용할 경우 해킹을 통한 영상물의 유포행위나 분실한 스마트폰에 저장된 영상물의 유포행위 등에 대한 포섭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2. 불법촬영물의 불법성에 따른 유형 분류

불법촬영물에 의한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익명성, 편재성, 시간과 공간의 비 제약성 등의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징들은 불법촬영물에 의한 인권침해의 양상을 오프라인 공간과 달리 신속하고 광범위한 전달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피해의 범위와 강도를 높이게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법촬영물의 불법성의 범위에 대해 판단할 때 피해자들의 피해

12) 윤상민, 앞의 논문, 200쪽.

13) Ryan David, “European Remedial Coherence in the Regulation of Non-Consensual Disclosures of Sexual Images”, *Computer Law & Security Review*, 34(5), 2018, p.1054.

14) Beyens Jolien/Lievens Eva, “A Legal Perspective on the Non-Consensual Dissemination of Sexual Images: Identifying Strengths and Weaknesses of Legislation in the US, UK and Belgium”,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Crime and Justice* 47, 2016, p.32.

정도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상의 저속함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촬영된 신체부위가 어디인지, 노출의 정도는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동의는 있었는지 등의 여부도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중요하겠지만,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2차, 3차 피해예방을 위해 광범위한 전파와 개인신상의 노출을 막고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불법촬영물에 의한 범죄의 불법성 정도를 파악하고 일정 기준에 따른 분류를 하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과 더불어 가해자에 대해서도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인권침해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될 것이기에 불법성의 정도에 따른 유형을 분류해 보고자 한다.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

유포형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된 영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제시 또는 전시·상영하는 행위
제작형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디지털 성폭력 행위를 제공할 목적으로 제조·유포·수입·수출하는 행위
참여형	디지털 성폭력 행위의 게시물에 댓글, 연락 등으로 동조·참여하는 등 가담하는 행위
소비형	불법촬영물을 소지·매입·시청하는 행위

2.1 촬영 동의 여부에 따른 분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 즉 비동의 촬영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촬영자체의 불법이 아닌 촬영 이후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전자의 경우 비동의 촬영을, 후자의 경우에는 동의에 의한 촬영의 규제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불법촬영물’이란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신체의 일부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촬영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촬영행위 자체를 불법이라고 해야 한다.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비동의의 유포행위(리벤지포르노)’에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했을 때 ‘불법촬영물’이 될 수 있는 요건은 연인 사이의 성행위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성행위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촬영·유포하는 경우와 설령 동의를 받고 촬영한 영상이라 하더라도 촬영된 영상을 동의 없이 유포·소지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은 촬영자체에 불법성이 내재되어 있는 경우와 동의 없이 유포한 행위의 불법성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전자의 경우는 불법성의 인정시기에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분류가 필요한 이유는 기준과 시기에 따라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불법촬영과 유포라는 불법의 이중성을 내포하고 있고, 후자는 유포의 불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촬영’의 불법성에 대해 이야기 해 보겠다. 최근 발생한 이른바 ‘n번방’으로 불리는 사건을 계기로 성착취행위에 대한 불법촬영·유포에 대한 처벌규정과 불법촬영물의 소지 및 시청에 관한 처벌규정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신설하여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의 대상과 제재의 범위를 확대하고 강화시켰다. 이러한 조치는 디지털 성범죄의 특징으로 인한 더 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불법행위에 의한 촬영은 성착취에 따른 불법과 불법촬영물의 유포 및 시청, 그리고 소지의 불법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즉, 불법의 이중적 지위를 인정할 수 있어 더욱 엄중한 처벌을 규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 규정은 촬영자체가 불법인지, 불법행위에 의한 촬영인지에 대해 구분하지 않고 불법촬영물이라는 틀에서 포괄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런데 제재에 관해서는 양형 문제에서 사안별로 판단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⁵⁾ 사안에 따라 양형 문제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불법성의 유형에 따른 명확한 구분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한 불법촬영물에 대한 촬영 및 유포자와 소지 및 시청자 사이에는 공범성의 문제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특히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이 제1항 및 제2항과 더불어 해석된다면 불법촬영물을 소비하는 수요자의 역할은 공급자와 동일하게 봐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이에 불법촬영물의 공급자와 수요자를 필요적 공범 중 대항범으로 분류하고, 법정형이 서로 다른 규정¹⁶⁾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¹⁷⁾

2.2 피해 대상에 따른 분류

불법촬영 피해 대상에 따른 분류는 가장 기초적인 분류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각 피해 대상별 유형의 위험성을 기준으로 세분화하였다. 앞서서도 살펴본 것처럼 불법촬영물과 관련된 행위 유형은 그 범위가 매우 방대하기 때문에 현재 법률에서처럼 제재

15) 박현정, 앞의 논문, 114-115쪽.

16) 김신규, 형법총론 강의, 박영사, 2018, 421쪽; 이재상/장영민/강동범, 형법총론 제10판, 박영사, 2019, 448쪽.

17) 박현정, 앞의 논문, 115쪽.

의 대상이나 범위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포괄적 규정은 피해자 또는 잠재적 피해자들에게 가해자들이 적정한 수준의 처벌을 받지 않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하며, 이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이나 고통이 가중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통칭되어 사용하고 있는 ‘불법촬영물’과 관련된 행위 유형을 촬영의 대상이나 위협성의 정도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수사나 재판에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 대상을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면, 불특정다수인, 불특정소수인, 특정다수인, 특정소수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우선 피해 대상이 불특정다수인인 경우에는 지하철이나 엘리베이터,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위로 상대방의 은밀한 신체부위를 촬영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최근 지하철역 등에서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국의 전 앵커인 김모씨의 사건을 들 수 있다. 김모씨는 서울 용산구, 모 지역의 지하철 내부, 서초구의 한 건물 에스컬레이터, 지하철 영등포구청역 승강장 내에서 짧은 반바지나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하의 속 부위를 불법 촬영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범죄라고 할 수 있다.¹⁸⁾

다음은 불특정소수인이 피해 대상인 경우로 예를 들어 드론 등을 이용하여 접근이 불가능할 것 같은 지역에서 불법촬영 등을 하는 경우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부산에서는 드론에 부착된 고성능 카메라 렌즈를 확대해 고층 아파트 집 안에서 한 남녀가 성관계를 갖는 장면을 촬영하는 범죄가 발생하였으나, 드론이 추락하면서 주민의 신고로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다. 이렇게 드론 등을 이용한 범죄의 경우에는 단속 규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불특정소수인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등의 사건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¹⁹⁾

그리고 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분류는 회사나 학교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출입이 허용된 관계자들에 의해 발생되어지는 불법촬영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남 창녕의 한 중학교 여자화장실에 이 학교 교사가 몰래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²⁰⁾

마지막으로 특정소수인에 대한 유형의 경우에는 연인 간에 성적행위를 촬영하여(동

18) 국민일보, “‘치맛속 몰카’ 한번이 아니었다…피해자 최소 7명”,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162593&code=61121111&cp=mv>>, 검색일: 2020. 12. 23.

19) 한국경제, “드론 띄워 몰카 찍은 40대男…아파트주민 성관계 영상까지”,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100749957>>, 검색일: 2020. 12. 23.

20) 동아닷컴, “여중 화장실에 몰카 설치한 30대 교사 징역 1년 6개월”,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128/105165042/2>>, 검색일: 2021. 1. 28.

의 또는 비동의 모두 해당) 해당 영상물을 소지하거나 유포하는 경우나, 최근 발생한 n번방 사건에서와 같이 성착취영상물을 촬영하여 유포 및 소지·시청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故구하라 폭행·협박’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연인이었던 최모씨가 연인간의 동의 없는 성행위 촬영물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한 경우²¹⁾가 전자의 경우에 해당하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텔레그램, 디스코드, 라인, 위커, 와이어 등의 메신저 앱을 이용하여 “스폰 알바 모집”과 같은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 이를 비밀로 협박해 성착취영상물을 촬영·유포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인 일명 ‘박사방’이라 불렸던 n번방 사건이 후자의 경우이다. n번방 사건의 경우 피해자에 아동이나 청소년 등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으며, 유료회원을 중심으로 한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준 사건이었다.²²⁾

〈피해 대상에 따른 분류〉²³⁾

대 상	내 용
불특정다수인	· 공공장소 등에서 무작위로 촬영하는 경우
불특정소수인	· 드론 등을 이용한 특정지역에서의 불법촬영
특정다수인	· 회사나 학교 등 관계자 출입 영역에서의 불법촬영
특정소수인	· 연인 간 발생하는 동의·비동의 촬영과 해당 영상물의 소지·유포 · 성착취영상물의 촬영·유포, 소지·시청

III. 불법촬영물의 위험성과 대응방안 검토

1. 문제의 인식

촬영행위 자체가 불법인지, 불법행위로 인한 촬영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촬영에 의한 피해자의 경우에는 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엄청난 정신적 충격과 심리적 고통, 그리

21) KBS NEWS, “‘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 징역 1년 확정”,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26266&ref=A>>, 검색일: 2020. 12. 20.

22) 파이낸셜 뉴스, “경찰 ‘박사방·n번방’ 유료회원 1000명 이상 수사 중”, <<https://www.fnnews.com/news/202011021151203962>>, 검색일: 2020. 12. 20.

23) 박현정, 앞의 논문, 116쪽.

고 공포에 떨어야 한다. 이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되며, 사회와의 관계를 스스로 단절한 채 갇힌 삶을 살게 된다. 이러한 피해를 언론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접하게 되는 잠재적 피해자들 또한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으며, 결국 2차, 3차 피해로 확대될 수 있다. 그리고 불법으로 촬영된 영상물의 경우 대상 여부를 불문하고 촬영대상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설령 인지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감수해야 할 사회적 비난이나 좋지 않은 시선 등을 의식해 숨기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암수범죄의 가능성도 높아지게 된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사회구조상 여전히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촬영기법이나 도구도 다양²⁴⁾하게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욱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불법촬영에 의한 불법촬영물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아래에서는 각각의 유형별로 그 위험성을 살펴보고 대응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불법촬영물에 의한 위험성 증가 원인

2.1 암수범죄의 증가와 낙인에 의한 위험성

우선, 암수범죄 및 낙인에 의한 위험성에 대해 살펴보겠다. 불법행위에 의한 촬영과 그 영상물의 유포 및 소지, 그리고 시청 등의 행위는 피해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을 앞에서 살펴보았다. 이는 촬영기법이나 도구의 다양성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양한 도구를 활용한 공공장소에서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불법촬영의 경우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신원확인이 곤란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수사기관에 의한 피해자의 특징이 어렵고 범인의 검거 가능성도 어려워지게 된다. 이로 인하여 암수범죄가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이외에도 데이터폭력에서 기인하는 불법촬영물의 경우 최초 촬영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절차라는 생각에 상대방의 동의하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헤어진 이후에는 상대방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유포되기 때문에 암수범죄가 증가하게 될 가능성이

24) 박지혜,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변형카메라 이용 불법촬영범죄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범죄수사학연구 제5권 제1호, 경찰대학 수사과학연구센터, 2019, 79쪽; “기술의 발달에 따라 카메라의 모양을 다양한 형태로 변형이 가능하게 되면서 그 종류가 160여가지에 이르며, 크기도 초소형으로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알아보기 힘들다. 예컨대, 카메라의 모양을 자동차 열쇠, 안경, 단추 등의 모양으로 변형시켜 피해자들이 카메라를 인식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높은 것이다.

불법촬영을 통해 영상물이 SNS 등을 통해 유포되는 경우 이를 인지한 피해자는 엄청난 정신적 충격과 심리적 고통, 그리고 공포에 떨어야 한다. 이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되며, 사회와의 관계를 스스로 단절한 채 갇힌 삶을 살게 되는데, 이는 이렇게 유포된 영상물이 영구적으로 완벽하게 삭제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사실 앞에서 피해자들은 모멸감, 분노, 무형의 공포,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오명 등과 같은 낙인에 의한 위험성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²⁵⁾

2.2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으로 인한 위험성의 증대

불법행위에 의해 촬영된 영상물의 유포는 물리적 공간을 초월하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확산되는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며, 전파되는 속도도 빠르다. 그리고 유포행위의 다양성과 복잡한 경로 탓에 누구에 의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또는 언제부터 피해가 발생하였는지 등을 밝혀내는 일이 매우 어렵다. 또한 쉽게 복제되는 특성으로 인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오프라인에서 성폭력범죄와 관련된 도구로 사용되기도 하고, 불법적인 영리 추구의 목적으로 웹하드 등 유통플랫폼을 통해 조직적으로 유포되기도 한다.²⁶⁾ 이렇게 유포된 불법촬영물은 국내 수사망을 회피할 목적으로 해외 서버(server)를 통하여 유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급자와 수요자를 추적하는 것이 쉽지 않고, 관련 자료를 전송받아 시청한 후 클라우드 서비스(cloud service)²⁷⁾ 등을 이용하여 해당 데이터를 분산하여 보관하다가 필요할 때마다 언제 어디서든 꺼내어 시청할 수 있는 등 소지의 방법 등이 간편해지면서 피해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결국 이러한 방식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된 불법

25) 서승희, “사이버성폭력 피해의 특성과 근절을 위한 방안-비동의유포 성적촬영물을 중심으로-”, 이화젠더법학 제9권 제3호,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17, 67-68쪽.

26) 김숙희/김영미/김현아/서승희/장윤정, “디지털 성폭력 피해 영상물 삭제와 처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화젠더법학 제10권 제1호,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18, 54쪽.

27) 인터넷으로 연결된 초대형 고성능 컴퓨터(데이터센터)에 소프트웨어와 콘텐츠를 저장해 두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쓸 수 있는 서비스다. 사용자가 스마트폰이나 PC 등을 통해 문서, 음악, 동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한편, 클라우드 컴퓨팅은 데스크톱PC·휴대폰·노트북 등 물리적으로 서로 다른 위치에 존재하는 다양한 정보들을 웹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활용, 대용량 데이터베이스를 가상화기술로 통합해 제공하는 기술 및 환경을 말한다. 통합된 데이터들은 인터넷가상데이터센터에서 분산처리하고, 이 데이터들을 다시 가공하거나 각 단말기로 보낼 수도 있다. 이는 개인 단말기에는 정보를 남기지 않고 중앙시스템에 연결해 사용하므로 정보의 보안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영상물은 삭제나 차단관리 등이 어렵게 되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 증대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2.3 필요적 공범에서 대항법적 성격에 따른 위험성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제1항에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 의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하거나 판매, 임대, 전시 및 상영한 자에 대한 처벌과 동의에 의한 촬영물의 비동의 유포행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4항에서는 불법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하거나 구입 및 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대해 불법영상물을 촬영·유포하는 자를 공급자 또는 제공자로 보고, 소지하거나 구입 및 저자 또는 시청한 자를 공급받는 자 또는 제공받는 자로 보아 이들은 서로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한 행위로서 필요적 공범에서 대항법의 성격을 갖는다고 해석하는 견해²⁸⁾가 있으며, 공범의 경우에는 단일범죄에 비해 위험성이 높고, 인터넷 활용이라는 전파성과 삭제의 어려움으로 피해 확산의 높은 위험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

3. 위험성 감소를 위한 대응방안의 모색

3.1 불법촬영물의 삭제의무 강화

암수범죄의 증가와 낙인에 의한 2차, 3차 피해를 막기 위해 제시되는 몇 가지의 대안 중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불법촬영물의 완전한 삭제를 위한 정책의 강화라고 생각한다. 불법촬영물이 유포되는 경로 대부분이 인터넷 공간이기 때문이다. 인터넷 공간의 특성상 불법으로 촬영된 영상물이 한번 유포되면 어떤 경로로 어디까지 전파되었는지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러한 특징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순간 그 위험성은 급속도로 확산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물리적·정신적인 피해의 고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사회로부터의 단절과 고립으로 인해 3차 이상의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관련 법률들의 개정이 이루어졌기에 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8)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는 박현정, 앞의 논문, 118-119쪽 이하 참조.

우선, 정부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의 유통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이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현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제22조의5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규정을 신설하였다.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 및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조치의무사업자는 자신이 운영하고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에서 ‘불법촬영물’ 등이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하고, 삭제요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요청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와 접속을 차단하는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불법촬영물이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과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말한다. 또한 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에서 말하는 조치의무사업자가 어떠한 사업자를 지칭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고,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어떻게 취해야 하는 것인지가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그 내용의 명확성이 분명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²⁹⁾ 이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내용은 불법촬영물 등을 발견한 이용자가 사업자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기능과 서비스 안에서 유통되지 못하도록 인식하고 이용자의 검색 및 송수신을 제한하는 조치와 경고문구 발송 등을 고려하고 있다”는 설명을 하였다.³⁰⁾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명은 문언상 부가통신사업자가 스스로 외부의 신고나 요청과 별도로 자체적인 활동을 통해 불법촬영물 등의 존재를 “인식”하고 이러한 게시물을

29) 이와 관련하여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벤처기업협회, 그리고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2020년 5월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인터넷 산업 규제법안들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 공동질 의서를 발송하였다. 해당 질의서에는 “불법촬영물에 대한 유통방지 의무를 위해 이용자의 사적 공간에까지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라는 것은 민간 사업자에 사적 검열을 강제하는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하고, 이 과정에서 사생활 및 통신비밀에 대한 이용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어떤 보완사항을 검토 중인지 알고 싶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다.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 공동보도자료, “인기협·벤기협·코스포, 정부에 인터넷산업 규제법안 및 시행령에 대한 입장을 묻다”, <<http://www.kintemet.org/news/press/view/211>>, 검색일: 2021. 02. 15.

30) 방송통신위원회 설명자료, “인터넷 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 강화 법안은 사적검열의 우려가 없습니다”, <<https://www.gov.kr/portal/ntnadmNews/2162576>>, 검색일: 2021. 02. 15.

이용자가 검색하거나 송수신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조치가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모니터링 의무’를 전제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대통령령의 내용은 ‘신고 또는 요청에 의해 인식한 해당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삭제 등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의 내용과 상응하지 않게 된다.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에서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경우에 대해 불법촬영물 등이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단체의 요청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신고나 요청 등에 의해 불법촬영물의 존재를 “인식”한 경우 삭제 등 조치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불법촬영물 등을 인식하고 발견하는 상황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서 역시 대통령령의 내용과 조화가 되지 않을 것이다.³¹⁾ 따라서 향후 시행령 등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불법촬영물 등이 주로 유통되는 서비스의 유형을 파악해 고려하고 사업자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조치의무 사업자의 범위나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방법에 대한 규정의 명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발견한 불법 촬영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권한이 없어 불법 촬영물의 신속한 차단에 어려움이 있는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이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4 제2항 및 제3항을 신설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가 청소년 유해정보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등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44조의7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개정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불법 촬영물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요청 시 즉시 영상물을 삭제하고 차단하도록 하는 신속처리절차(FAST TRACK)를 마련하였다.³²⁾

그러나 법률의 개정에 따른 삭제 및 차단조치를 위해서 필요한 막대한 비용의 문제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온라인상의 불법촬영 영상물을 전부 삭제하

31) 허진성,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불법정보 삭제·차단의무에 대한 연구 -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의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언론과 법 제19권 제2호, 한국언론법학회, 2020, 66-67쪽.

32) 김학웅, “성폭력특례법에 따른 불법촬영물 삭제의무 관련 개정”, KISO 저널 제34호,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2019, 46쪽.

기 위한 비용은 정확한 산출이 어려울 정도로 피해자가 혼자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독자적 담당기관을 설치하여 정부가 비용을 선지급한 후 불법촬영물 등을 촬영하여 유포한 범죄자에게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불법촬영물에 의한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부딪히게 될 참담하고 비참한 현실을 고려할 때 우리 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의 최우선은 역시 삭제 의무나 전파의 차단에 관련된 규제의 강화가 아닐까 한다. 이를 위해 법의 개정이나 규정의 신설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법집행기관이나 유관기관들의 방지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욱 필요한 것은 아닐까 조심스럽게 제안해 본다.

3.2 수사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

불법촬영물에 의한 위협의 감소를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관련 자료의 신속한 삭제와 유관기관을 통한 차단이라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나 삭제와 차단을 위해서는 해당 자료의 근원지를 찾아내 그 뿌리부터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기에 수사기관의 수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하여 유포되는 불법촬영물과 관련된 수사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 우선 가해자의 특정과 관련하여 비교적 쉽게 특정할 수 있는 비동의 유포행위(리벤지포르노)와는 달리 제3자에 의한 유포행위의 경우에는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리고 범죄의 입증을 위한 증거물의 확보와 관련하여 디지털 성범죄라는 특성상 증거의 훼손이나 인멸 등이 비교적 쉬운데 반해 물증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영장 발부의 어려움이 있으며, 수사망의 회피를 위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n번방 사건’과 같이 해외메신저인 텔레그램을 이용할 경우 그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는데, 이는 텔레그램 서버가 어디에 있는지 공개된 적이 없으며 담당자와의 소통도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의 법 집행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해외사업자에도 의무가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역외적용 규정이 도입되었고, 정보통신망법상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를 신설하였으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도 역외적용 규정 등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법제의 정비를 통한 문제 해결을 시도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해외 웹사이트를 통한 헤비 업로

더(heavy uploader)를 적극적으로 검거하기 위한 수사당국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클라우드 서비스 등으로 인하여 정보의 분산보관이 용이해져 기존의 압수·수색방법으로는 불법 촬영된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집행이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압수·수색의 대상인 정보처리장치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link)된 정보저장매체 등에 대한 압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국내인이 해외 서버를 둔 불법적인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동 사이트에 국내 이용자를 유인하기 위해 국내 불법 촬영물 등을 게시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러한 웹사이트 운영자에 대해서도 사이트 내에 정보 활용 및 역추적을 통해 적극 수사하는 것이 필요하며,³³⁾ 국제공조수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를 전담하는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의 운영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앞서 설명한 것처럼 텔레그램의 경우는 해외사업자 중에서도 사업장의 위치가 파악되지 않는 특수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향후 수사기관, 해외기관 등과 협조하여 규제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3.3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최근 불법촬영물의 유포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급증에 따라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해당 범죄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다루기보다는 가해자의 처벌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따라서 형사적 제재에 의한 처벌과는 별도로 민사상 피해보상이나 위자료 청구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구비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³⁴⁾

또한 불법촬영물의 비동의 유포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에서 피해자와 관련된 가장 큰 특징이 범죄 발생을 인지한 시점부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끝나는 시점까지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진행 중에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회복을 지원하는 과정에서도 피해자가 2차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는 등 그 위험성은

33) 최용성/곽대훈, “성폭력처벌법 제14조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성범죄의 합리적 대응방안 연구”, 한국경찰학회 보 통권 81호, 한국경찰학회, 2020, 236-238쪽 참조.

34) 박현정, 앞의 논문, 125쪽.

다른 어떠한 범죄보다도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불법촬영물의 피해자들은 자신이 촬영된 영상물이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 이외의 사람에게도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자신을 문란한 사람으로 평가할 것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인해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에게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증거물로 자신의 영상물을 제출하거나 채증을 하는 등의 모든 과정이 고통스러운 2차 피해의 연속일 수 있으며, 만약 피해자와 수사 담당자의 성별이 다른 경우에는 자신을 불법으로 촬영한 영상물이 다시 타인에 의해 시청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으로 공포심을 느낄 수도 있다.³⁵⁾ 그리고 피해회복을 위한 유관기관의 담당자들 중에서 성인지감수성에 대해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는 점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렇듯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올바른 피해자 보호와 피해회복을 위해서는 우선 피해지원 담당자들이 지속적인 교육 등을 통하여 피해자의 심리상태와 특성에 대해 잘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지지상담이나 심리치료 권유 이외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IV. 결어

그동안 우리 사회는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의 보호를 위해 관련 법률을 제정하거나 제도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소외되어 고통받는 계층은 존재하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인터넷 플랫폼의 변화는 정보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면서 현대인의 생활 전반에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사이버 공간에서의 범죄 증가라는 부정적인 면도 동시에 발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범죄 중 가장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불법촬영물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이다. 특히, 이혼이나 연인 간 불화가 원인이 되는 데이트 폭력의 한 유형으로서 성적 촬영물의 비동의 유포행위(리벤지포ρν노)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특성상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디지털 성범죄는 인터넷 플랫폼을 이용한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리적인 시공간을 초월한다. 즉 사이버 공간이

35) 서승희, 앞의 논문, 69-70쪽.

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피해의 확산이 빠르고 광범위하다. 그러나 디지털 성범죄를 접하는 사람들은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비동의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유포하는 행위가 범죄라는 것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상은 불법촬영물에 대한 접촉 빈도가 높아 그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저하된 부분도 있겠지만,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흡하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본 논문에서 논의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중 데이트폭력 관련 성적 촬영물의 비동의 유포행위(리벤지포르노)는 밀접관계라는 특징으로 인하여 일반적 형태의 범죄에 비해 2차 범죄로 연결되어 피해가 확산될 위험성이 높고 피해자 보호가 쉽지 않으며, 피해정도에 비해 규제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는 데이트폭력에 대한 독자적인 규정의 미비에 따라 개념이 통일되지 못하고 다양한 용어가 혼용되고 있으며, 행위 유형에 따른 불법의 정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아 처벌의 수위나 제재의 기준이 국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않다는 점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용어 중 리벤지포르노가 가지는 문제점과 위험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상당히 악의적이며 노골적인 표현으로 성 인지감수성을 해칠 수 있는 리벤지포르노라는 용어 대신에 해킹을 통한 영상물의 유포 행위나 분실한 스마트폰에 저장된 영상물의 유포행위 등에 대한 포섭도 가능할 수 있는 ‘비동의 유포행위’라는 단어의 사용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불법촬영물에 의한 범죄의 불법성 정도를 파악하고 일정 기준에 따른 분류를 하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과 더불어 가해자에 대해서도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인권침해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될 것이기에 불법성의 정도에 따른 유형을 분류해 보았다.

그리고 불법촬영물에 의한 위험성의 정도를 파악하고 위험성이 증가하는 원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불법으로 촬영된 영상물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인터넷 공간에 유포하는 행위인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암수범죄가 증가하고 낙인으로 인한 사회적 단절 등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가 원인이 되어 해당 범죄로 인한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렇듯 위험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2차, 3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인터넷 공간의 특성상 불법으로 촬영된 영상물이 한번 유포되면 어떤 경로로 어디까지 전파되었는지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고, 복제가 쉬워 급속도로 확산되기 때문에 불법촬영물에 의한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부딪히게 될 참담하

고 비참한 현실을 고려할 때 우리 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의 최우선은 역시 삭제 의무나 전파의 차단에 관련된 규제의 강화가 아닐까 한다. 이를 위해 법의 개정이나 규정의 신설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법집행기관이나 유관기관들의 방지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욱 필요한 것은 아닐까 조심스럽게 제안해 보았다.

그리고 수사기관에 대한 인적·물적 투자를 확대하여 범죄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며, 올바른 피해자 보호와 피해회복을 위해 유관기관의 담당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등을 통하여 피해자의 심리상태와 특성에 대해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김신규, 인권법 강의, 청목출판사, 2016.

_____, 형법총론 강의, 박영사, 2018.

이재상/장영민/강동범, 형법총론 제10판, 박영사, 2019.

장다혜/김수아, 온라인 성폭력 범죄의 변화에 따른 처벌 및 규제 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8.

2. 학술지

김숙희/김영미/김현아/서승희/장윤정, “디지털 성폭력 피해 영상물 삭제와 처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화젠더법학 제10권 제1호,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18, 41-66쪽.

김은경, “사이버 성폭력의 현실과 쟁점들”,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제7권,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2001, 72-117쪽.

김학웅, “성폭력특례법에 따른 불법촬영물 삭제의무 관련 개정”, KISO 저널 제34호,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2019, 45-48쪽.

나달숙,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보호와 인권교육 방향”, 법과인권교육연구 제6권 제3호,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2013, 23-55쪽.

박지혜,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변형카메라 이용 불법촬영범죄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범죄수사학연구 제5권 제1호, 경찰대학 수사과학연구센터, 2019, 75-103쪽.

박현정, “불법촬영물 소지 및 시청에 관한 처벌규정의 비교법적 고찰-성폭력처벌법 제14조를 중심으로-”, 법이론실무연구 제8권 제4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20, 109-130쪽.

배상균, “‘도촬행위’ 현상과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 성폭력처벌법 제14조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제27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 199-227쪽.

- 서승희, “사이버성폭력 피해의 특성과 근절을 위한 방안-비동의유포 성적촬영물을 중심으로-”, 이화젠더법학 제9권 제3호,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17, 59-95쪽.
- 안영규, “불법촬영 관련 입법적 제언을 위한 질적 연구”, 한국범죄정보연구 제4권 제1호,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2019, 57-78쪽.
- 윤상민, “일본의 리벤지 포르노방지법의 내용과 우리나라의 대처 현황 및 그 시사점”, 법학연구 제17권 제4호, 한국법학회, 2017, 199-222쪽.
- 이은영, “비동의 성적촬영물의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제15권 제4호, 한국범죄심리학회, 2019, 163-176쪽.
- 최용성/곽대훈, “성폭력처벌법 제14조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성범죄의 합리적 대응방안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통권 81호, 한국경찰학회, 2020, 221-248쪽.
- 허진성,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불법정보 삭제·차단의무에 대한 연구 -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의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언론과 법 제19권 제2호, 한국언론법학회, 2020, 43-76쪽.
- Beyens Jolien/Lievens Eva, “A Legal Perspective on the Non-Consensual Dissemination of Sexual Images: Identifying Strengths and Weaknesses of Legislation in the US, UK and Belgium”,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Crime and Justice* 47, 2016, pp.31-43.
- Ryan David, “European Remedial Coherence in the Regulation of Non-Consensual Disclosures of Sexual Images”, *Computer Law & Security Review*, 34(5), 2018, pp.1053-1076.

3. 기타

- 국민일보, “‘치맛속 몰카’ 한번이 아니었다…피해자 최소 7명”,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162593&code=61121111&cp=mv>>, 검색일: 2020. 12. 23.
- 동아닷컴, “여중 화장실에 몰카 설치한 30대 교사 징역 1년 6개월”,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128/105165042/2>>, 검색일: 2021. 1. 28.
- 방송통신위원회 설명자료, “인터넷 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 강화 법안은 사적검열의 우려가 없습니다”, <<https://www.gov.kr/portal/ntnadmNews/2162576>>, 검색일: 2021. 2. 15.

-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 공동보도자료, “인기협·벤기협·코스포, 정부에 인터넷산업
규제법안 및 시행령에 대한 입장을 묻다”, <[http://www.kinternet.org/news/
press/view/211](http://www.kinternet.org/news/press/view/211)>, 검색일: 2021. 2. 15.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 <[https://www.korea.kr/news/
pressReleaseView.do?newsId=156228608](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228608)>, 검색일: 2021. 1. 10.
- 파이낸셜 뉴스, “경찰 ‘박사방·n번방 무료회원 1000명 이상 수사 중””, <[https://www.
fnnews.com/news/202011021151203962](https://www.fnnews.com/news/202011021151203962)>, 검색일: 2020. 12. 20.
- 한국경제, “드론 띄워 몰카 찍은 40대男…아파트주민 성관계 영상까지”, <[https://www.
hankyung.com/society/article/2020100749957](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100749957)>, 검색일: 2020. 12. 23.
- KBS NEWS, “‘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 징역 1년 확정”, <[http://news.kbs.co.kr/
news/view.do?ncd=5026266&ref=A](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26266&ref=A)>, 검색일: 2020. 12. 20.

[Abstract]

A Study on the Dangers of Illegal Filming and Counterplan

Kim, Jae-Han*

Unlike existing sexual violence crimes, the crimes in the form of distributing sex-related videos on online has the characteristic that spread rapidly to a wide range of areas. In particular, since it is difficult to delete the distributed video, recovering damage also difficult by the continuous damage occurrence.

As a type of dating violence, the act of distributing a video containing sexual relations or sensitive private life with a lover that was filmed in the past as a means of revenge for the breakup notification, that is, revenge porn. Therefore, it has emerged as a serious social problem, discussions regarding counterplans are continuing.

Recently, a so-called 'Nth room' incident occurred, and the whole people were angry. And with this incident as a trigger, the penalties for illegal filming and distribution of sexually exploited video, possession and viewing of illegal filmed material, were set forth in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CRIMES". And efforts are being made to strengthen penalties for digital sex crimes and protect victims.

However, the act of distributing illegal filming online as a means of dating violence is occurs in a close relationship compared to the general type of crime. Thus, it is very likely that the damage will spread as a secondary crime. In order to fundamentally solve this problem, it can be said that it is inevitable to prepare an independent punishment law.

To this end, analyzing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CRIMES" Article 14 and foreign legislations, and trying to present the basis for reasonable sanctions regulations. In addition, to prepare the prevent plan for criminal acts related to sexual relations with lovers or illegal filming containing sensitive privacy and an institutional arrangement for the protection of victims can be prepared

* Senior Researcher, Ph.D., Mokpo National University Law Institute

together, the basic direction of legislation was described.

[Key Words] Illegal Filming, Revenge Pornography, Digital Sexual Offences, Obligation to Delete, Dangers